

한의예·학과 한의학교육실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학과 한의학교육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한의학교육실은 한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고 1차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한의학교육 기획,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한의학교육실은 제2조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한의학 교육 정책 제안
2.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성과(시기, 과정, 졸업성과 등) 점검 및 분석
2. 한의학 교육과정 개편, 개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3. 한의학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4. 한의학교육 표준안 마련
5. 한의학교육 교육방법 및 학생 평가방법 개발
6. 한의학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7. 한의학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
8. 기타 한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실장) ①한의학교육실에 실장 1인을 두며, 실장은 전임교원 중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실장은 한의학교육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한의학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실장, 한의예과장, 한의학과장, 학생대표, 행정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평교수 위원의 경우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실 직원 1인을 행정간사로 한다.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의학교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한의학교육실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3. 한의학교육실에서 제안한 사항
4. 기타 한의학교육 관련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①한의학교육실은 전문위원회를 두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한의학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평가로 4개의 위원회를 둔다.

1. 한의학교육정책 전문위원회: 기초한의학교육, 임상한의학교육, 임상실습교육 등 한의학교육의 전체 구성과 방향 등을 설계 및 연구·개발한다.
2.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교육성과(사명, 시기성과, 과정성과, 졸업성과), 교육과정 개발, 개편, 평가, 환류 등을 설계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교육방법 전문위원회: 한의학교육 맞춤형 PBL, TBL, Flipped-Learning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학생평가 전문위원회: 한의학교육에 부합하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CBT평가 등 다양한 학생평가 방법을 설계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교원 및 학생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임명 등) ①한의학교육실의 전문위원은 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한의학교육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원, 조교 등) ① 교육실에는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1. 전임연구원은 교육실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수료한 자를 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실장이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신분,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한의학교육실 담당 조교는 한의과대학행정실, 한의예학과 조교 중 한의학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자를 학장이 임명한다.

제9조(예산지원) 한의학교육실의 교육활동을 위한 소정의 예산(운영비, 연구비 등)을 본 대학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한의학교육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과대학 보직자 회의에서 승인한다.

부 칙

(시행)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